

## 15.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558호 1997. 12.31

### 주 요 골 자

- 가.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에 따라 보육용품임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정하고, 종교의식용 피아노에 대한 사실증명서류의 발급기관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 변경함(령 제30조제2항).
- 나. 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인 경승용차 전용의 카에어컨 부분품인 압축기·의축기·증발기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(령 별표1).
- 다. 관광산업의 육성과 외화획득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(령 별표 2).

### 개 정 이 유

특별소비세법이 개정(1997. 12. 13, 법률 제5425호)되어 보육시설이 구입하는 보육용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게됨에 따라 보육용품의 확인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과세대상물품의 과세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

## 주 요 내 용

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의3(잠정세율 적용물품) 법 제1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잠정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은 별표 1 제2종제3호나목의 물품중 종합유선방송텔레비전용 컨버터로 한다.

제30조제2항 단서중 “면제를”을 “감면을”로 하고, 동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동항제1호의2중 “종교의식용의 것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”를 “보육시설보육용 및 종교의식용의 것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”로 한다.

다만,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한 증명서류는 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,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.

가. 법 제18호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보육시설에 진열하거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

나. 법 제18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용 또는 보육시설보육용 영사기와 촬영기(고급사진기를 포함한

다.)

별표 1 제1종제1호중 “전자유기장”을 “컴퓨터게임장”으로 하고, 동표 제1종제5호나목중 “증발기”를 “증발기(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이고 길이가 3.5미터이하이며 폭이 1.5미터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카지노. 다만,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전용의 카지노로서 외국인(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를 포함한다)이 입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

### - 부 칙 -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일반적 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③(과세장소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④(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